# 제101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1 |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<br>(국토교통부) | 1.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게재 사항(강화)<br>ㅇ 인터넷 광고 시 직접 매도 또는 매매알선(자동차 소유 매매업자 상호)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 부과<br>▶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| 규제<br>심사<br>완료 |
| 2 |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<br>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| 1. 영상정보처리기기 비밀번호 설정 기준 강화(강화)<br>ㅇ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해 해킹공격에 강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조건 신설<br>– (비밀번호 길이 · 조합) 비밀번호는 대문자, 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<br>– (실패횟수제한 · 잠금설정)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 횟수(최대 5회)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(30초~60분) 접속 차단<br>▶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 | 규제<br>심사<br>완료 |
| 3 |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개정안<br>(기후에너지환경부) | 1.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대상 확대(신설)<br>ㅇ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확대<br>– 필터, 세라믹볼, 수도꼭지 탭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<br>▶ 수도법 제14조<br>▶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2조 | 규제<br>심사<br>완료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4 |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<br>(기후에너지환경부) | 1.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(강화)<br>ㅇ 수입 또는 반입을 제한하는 유입주의 생물을 추가 지정<br>▶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2조 | 규제<br>심사<br>완료 |
| 5 |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<br>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<br>(기후에너지환경부) | 1. 자동차수입단체 회원사의 배출가스 부적합 이륜차 인증생략 사전 차단(강화)<br>ㅇ 협회 회원사 개별이륜차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기존 500대 → 99대로 축소하고, 7대 이상 동시 통관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적용<br>– 한국환경공단이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이 신청된 차량과 시험자동차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을 허용<br>– 인증 시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신청된 자동차에 대해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하도록 의무 부과<br>▶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, 제8조 | 본심사<br>예정 |
| 6 |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<br>(보건복지부) | 1. 간병서비스 관리 · 감독 대상 의료기관(신설)<br>ㅇ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 · 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를 규정<br>▶의료법 제47조의3<br>▶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| 본심사<br>예정 |
| | | 2. 간호 ·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(강화)<br>ㅇ 간호 ·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확대(나. 간호조무사: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30명당 1명 이상. 다만 입원환자 30명당 간호조무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)<br>▶의료법 제4조의2<br>▶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 | 규제<br>심사<br>완료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7 |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 | 1.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,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,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(신설)<br>ㅇ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·운영실적 미충족 기준,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<br>▶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| 규제 심사 완료 |
| | | 2. 보수교육의 내용, 이수시간,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,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,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(신설)<br>ㅇ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노숙인복지정책 등 자질향상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<br>ㅇ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·운영실적 미충족 기준,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설정<br>▶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| 규제 심사 완료 |
| 8 |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(NFPC 109) 개정안(소방청) | 1.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9) 일부개정(강화)<br>ㅇ 특수가연물을 저장 ·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에는 방수총을 별도 추가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겸용된 것을 설치토록 규정<br>▶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109) 제6조 | 규제 심사 완료 |
| 9 |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 | 1. 디지털의료 · 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(신설)<br>ㅇ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성능인증의 절차에 관한 내용 규정<br>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 | 규제 심사 완료 |
| | | 2. 디지털의료 · 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(신설)<br>ㅇ 디지털의료 · 건강지원기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,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성능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절차를 신설<br>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 | 규제 심사 완료 |

| no. | 법령명 | 규제내용 | 결과 |
|---|---|---|---|
| | | 3. 디지털의료 · 건강지원기기 회수 · 교환 · 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(신설)<br>ㅇ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, 행정청은 디지털의료 · 건강지원기기의 제조자, 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제품의 명칭, 조치 내용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, 회수·교환·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<br>– 또한,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<br>▶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 | 규제 심사 완료 |
| 10 |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 | 1. 성능평가의 기준 · 방법 및 제조 · 수입 · 판매 중지 등 조치(신설)<br>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3에 따른 “성능평가의 기준 및 시험방법”, “제조 · 수입 · 판매 중지 등 조치의 기준”을 추가<br>▶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8조의2, 제38조의4 | 규제 심사 완료 |